[미성년계약의 경우 - 계약자가 성년이 된 후]

OOO 취소 통지

◎ 수신인 : □□ 뷰티
대표 ○ ○ ○
서울시 송파구 OOO로 OOO-O
02-000-0000

◎ 발신인 : 소시모
서울시 종로구 OOO로 OO, OOO호
010-0000-0000

계약일자 :
구입물품 :
구입금액 : 원 (할부)

취소사유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 . . . 하교하던 중 귀사의 영업사원이 설문에 응해 주면 화장품 샘플을 준다고 권유하여 본인은 이에 응하였습니다.

3. 설문을 마친 후 위 영업사원이 디톡스 다이어트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있고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하며 복용하여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급 처리해 준다는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4. 본인이 00 물품을 구입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하였으므로, 민법 제5조 제2항, 민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바 이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체국에 가는 날짜를 씁니다.) 20 년 월 일

(위의 발신인과 같은 이름을 쓰고 도장 날인을 합니다.) 상기 계약자: (인)

※ 작성이 끝나면 동일한 문서를 2부 더 복사하여 총 3매를 작성합니다.